

상벌규정

제정 1993. 3. 10. 개정 1994. 1. 13.
개정 1998. 7. 24. 개정 2001. 3. 10.
개정 2001. 9. 1. 개정 2013. 3. 1.
 개정 2014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2 장 학생지도위원회

제3조(구성) ①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학부·학과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4조(업무) 학생지도위원회는 상벌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.

제5조(의결)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포 상

제6조(종류) 본 대학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최우수상 : 재학 중 전 학기 평균성적이 가장 우수한 졸업생에게 수여한다.
2. 우수상 : 재학 중 전 학기 평균성적이 해당 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졸업생에게 수여한다.
3. 공로상 : 재학 중 본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많았거나 대외적으로 본 대학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.
4. 봉사상 : 재학 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본 대학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수여한다.
5. 선행상 : 재학 중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에 수여한다.
6. 기타 : 각종 단체의 시상 의뢰자 및 총장이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제7조(자격) 본 대학 학칙에 따라 포상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.

2. 본 대학과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.
3.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.
4.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.
5.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.
6. 재학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.

제8조(동점자 처리기준) 성적포상자의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거 하여 처리한다.

1. 실질 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.
2. 총 득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.
3. 이수과목 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.
4. 취득학점 중 A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.
5. 연소자를 우선으로 한다.

제 4 장 징 계

제9조(징계)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본분을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한다.

제10조(징계구분) 본 대학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경고
2. 근신 : 3일 이상 7일 이내
3. 유기정학 : 14일 이내
4. 무기정학 : 15일 이상
5. 제적 (퇴학)

제11조(징계내용) 학생징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근신
 - 1) 학업 및 출석이 태만한 자
 - 2) 수강태도가 불량한 자
 - 3) 언동이 불순한 자
 - 4) 교내에서 허가 없이 음주한 자
 - 5) 지도에 불응한 자
 - 6) 신고계출 등을 상습적으로 이행치 않은 자
 - 7) 게시물을 무단으로 오손한 자
 - 8) 시설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자

- 9) 시험 중 가벼운 부정행위를 한 자
- 10) 허위 문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자
- 11) 기타 위에 준한 행위로써 학생신분을 이탈한 자

2. 정학 (유기, 무기)

- 1) 2회 이상의 근신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2) 교내에서 금전놀이 (사행) 행위를 한 자
- 3) 교내에서 폭행, 협박, 낭설을 유포한 자
- 4) 금품 또는 물품을 갈취 또는 절취한 자
- 5) 허위사실을 날조, 유포한 자
- 6) 허가 없이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부착한 자
- 7)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
- 8) 기물 파손 행위
- 9) 소요에 가담한 자
- 10) 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외설적 행위를 한 자
- 11) 시험 중 무거운 부정행위자
- 12)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집회를 행한 자
- 13) 수업 중 음주한 자
- 14) 허위공문서를 작성, 제출하는 자
- 15) 허가 없이 금품을 징수한 자
- 16) 불법 결사, 폭력행위를 한 자
- 17) 기타 위에 준한 행위로써 명예를 손상시킨 자

3. 퇴학 (제적)

- 1) 2회 이상 정학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자
- 2) 시험 중 극히 심한 부정행위를 한 자
- 3)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타에 미친 영향이 큰 학생
- 4) 공공기물을 고위로 파손, 오손한 자와 절취한 자
- 5) 소요를 모의 또는 주동한 자
- 6)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
- 7) 허가 없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부한 자
- 8) 집단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하는 자
- 9) 학교 내·외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
- 10) 공문서를 위조, 변조 또는 허위 작성한 자

- 11) 1), 2)항에 해당하는 자중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
- 12)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제12조(징계절차) ① 경고 및 근신에 해당하는 자는 교학처장이 해당 지도 교수 및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 처분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②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교학처장이 진상을 조사하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 위원회에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하고 징계기간 중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③ (자격상실) 모든 장학생 또는 학생간부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당해 년도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.

④ (징계통보) 모든 징계사항은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하며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교학처의 학적부 및 생활기록부에 등재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13조(징계의 감면 및 해제) ①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선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한 특별지도의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해제 할 수 있다.

제14조(세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